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456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조정, 해제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, 조정, 해제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6개소)

- 지정기간 : 2026년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21,103.22㎡) 내 지목 '도로' 한정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21,103.22	
서울특별시	성북구	하월곡동 40-107 일대	17,452.0	모아타운
	성북구	장위동 219-15 일대	23,025.1	
	성북구	삼선동3가 42-7 일대	16,815.15	
	중랑구	면목동 127-26 일대	21,829.1	
	은평구	응암동 227 일대	19,940.0	
	중랑구	면목동 377-4 일대	22,041.87	

※ 도로 취득 시 **이용 의무기간(5년)을 감안**하여 지정기간 설정

2. 허가구역 조정(구역변경) 대상지역

1) 구역변경 2개소

대상지역	면적(㎡)		지정기간	비고
	변경전	변경후		
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	37,709.7	25,405.2	2025.9.30. ~ 2026.8.30.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	감 12,304.5			
서대문구 홍은동 8-400 일대	96,780.8	87,929.6	2025.4.4. ~ 2026.4.3.	
	감 8,851.2			

○ 지정기간 : 변경 없음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6. 2. 17.) /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6. 2. 12.)

2.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

1) 해제 3개소

대상지역	면적(㎡)	지정기간	비고
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	14,152	2025.8.31. ~ 2026.8.30.	공공재개발
성동구 금호동4가 1109 일대	30,706	2025.4.4. ~ 2026.4.3.	공공재개발
성북구 석관동 124-42 일대	60,551	2024.9.10. ~ 2029.9.9.	모아타운

○ 해제 효력 : 공고일('26. 2. 12.) 즉시 효력 발생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지정 6개소)
- 붙임 2 (조정 2개소)
- 붙임 3 (해제 3개소)

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3. 성북구 삼선동3가 42-7 일대